

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8월 8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 이상민
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)

● 법률 제19623호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가목 중 “중앙회”를 “중앙회와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중소기업중앙회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”을 “중소기업중앙회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고, “동시이사장선거”란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호 후단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조합장선거(이하 “조합장선거”라 한다)”를 “조합장선거(이하 “조합장선거”라 한다)와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선거(이하 “이사장선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제1호에 따른 선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”로, “조합으로부터”를 “조합 또는 금고로부터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제1호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와”를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산림조합법」 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”로,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 및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”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, 이사장선거”로, “조합운영”을 “조합 또는 금고 운영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5항 중 “중앙회장”을 “중앙회장과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·중앙회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 중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·중앙회”를 “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·중앙회 또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·중앙회”로 한다.

제41조의 제목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 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“조합과”를 “조합 또는 금고와”로 한다.

다만,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·면·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4조제1항제1호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제1호에 따른 선거”로 한다.

제45조제5항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”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·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”로, “조합장선거(이하 이 조에서 “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”라 한다)”를 “조합장선거·이사장선거(이하 이 조에서 “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“조합장선거”를 “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조합”을 “조합 또는 금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조합과”를 “조합 또는 금고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조합과”를 “조합 또는 금고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”를 “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”으로, “조합과”를 “조합 또는 금고와”로 한다.

제78조제2항 중 “동시조합장선거”를 “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”로, “조합과”를 “조합 또는 금고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된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고, 동시이사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며, 투표소 설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읍·면·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되,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읍·면·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선거운동의 주체·기간·방법,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, 기부행위제한, 축의·부의금품 제공제한 등 선거운동 적용 대상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

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